#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서삼석·김원이·김철민

김남국 · 송갑석 · 이개호

위성곤 • 윤후덕 • 천준호

허 영·서영교·임오경

문진석 • 전용기 • 김민철

김정호 · 이병훈 · 박 정

이해식 • 이형석 • 김두관

이용빈 의원(22인)

## 제안이유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어 지역의 존폐 자체가 문제 되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2016년)는 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 화로 228개의 시·군·구 중 84곳(37%), 3,482개의 읍·면·동 중 1,383곳(4 0%)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지만 농촌·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임. 이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 함(안 제3조).
- 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5년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인구소멸위 기지역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 마.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 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소멸위 기지역지원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지방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율, 연령별·성별 인구구조, 재정여건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하며, 인구소멸위기지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인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주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교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및 제17조).
- 아. 국가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하여 도로망 확충, 산업단지 지정, 학교신설,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를 둘 수 있 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 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차.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5 조 및 제27조).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비율에 상응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시책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집행하기 위한 시책과 함께 지역에 적합한 독자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에서 지원된 재원

- 을 지원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사항과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법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인구소멸위기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구소멸위기지역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같은 법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14조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 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각각 5년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계획(이

- 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제14조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에속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지방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자치조직 또는지역공동체, 지역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지원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기초로 시·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원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0조제1 항에 따른 소관 시행계획과 별도로 지원계획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및 통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인구증감 현황에 관한 사항
- 2. 인구소멸위기지역 선정기준 및 인구증감 현황에 관한 사항
- 3.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출산율 제고,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억제에 관한 사항
- 4. 인구소멸위기지역의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 5.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 6. 인구소멸위기지역의 교육·문화·복지·주거·의료·환경 등 분야에서 의 지역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7. 지역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여건 의 개선에 관한 사항
- 8.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9.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10.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배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 구소멸위기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해당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지방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과 자기 소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당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통보·조정 및 점검절차, 제4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 그 밖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 설치) ①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 4.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 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 6.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

원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2.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자 또는 인구문제 및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3조에 따른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 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지방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지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심의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등의 심의
- 3.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및 건의
- 4. 그 밖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위치한 대학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 2.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 3. 읍·면·동 지역 주민대표
- ③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지역혁신협의회로 하여금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주체로서 읍·면·동 단위로 주민참여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등 기존의 주민참여기구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위원회(제3항에 따라 기능을 대신하는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기구(같은 항 후

단에 따라 기능을 대신하는 기존의 주민참여기구를 포함한다)의 운 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기획단을 둔다.
  - ②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인구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 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 을 지정할 수 있다.
  - 1. 인구감소율
  - 2. 연령별·성별 인구구조
  - 3. 재정여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정 및 해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차등적용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표를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등급을 매겨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② 그 밖에 차등등급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인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지역이주교류 통합정보 제공 및 인구추계) ① 국가 및 지방자 기 단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주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이주교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인구추계 등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인구추계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인구 통계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강화) ① 국가는 인구소멸위기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법인세를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도로망 확충을 위한 특례)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 기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준 이상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검증을 통하여 산업 단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1조(학교신설의 특례)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22조(교육재정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소멸위기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 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인구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재정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3조(어린이집의 확대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 내에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 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 설치 및 보건의 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별 균형을 이룬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5조(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26조(사업비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 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6항에 따른 차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제25조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 2. 그 밖에 이 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3. 제6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그 밖에 회계 운용에 관한 경비
  - 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제4항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한다.
  - ⑥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를 시·도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지사가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 8 시·도지사는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 7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①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①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29조(기금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추진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